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정 2021.11.05.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2.07.25.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선거를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세칙은 본회의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이하 “정·부회장”이라 한다)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세칙은 본회의 기타 학생 대표나 학과의 학생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본회의 정회원은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회 선거의 피선거권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일 것
2.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학기의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일 것
3.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부여받은 임기를 완료할 수 있는 자일 것
4.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일 것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① 본회의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2인, 감사위원회 2인, 회장이 지명한 1인 등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의 위원은 일반대학원 전체 학과(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 포함)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선거기간 시작 7일 이전에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의 유고나 궐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 관련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의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된 사항을 확정 공표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나 궐위일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한다.

제6조(임무와 권한) ①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의 정·부회장 선거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 세칙의 개정 및 본회의 기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본 세칙에 어긋나는 각종 사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각종 선거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선관위는 본회의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선관위 이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③ 선관위는 본 세칙에 어긋나는 각종 사건에 관한 판단과 처분의 권한을 가진다.

④ 선관위는 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의 선거운동 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7조(회의) ①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선관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무소와 게시판) ① 선관위의 사무소는 본회 사무소 안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둘 수 있다.

② 선관위는 각종 공고를 할 때 본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일, 선거기간, 선거인 명부

제9조(선거일) ① 본회 정·부회장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시행한다.

② 본회 총학생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시행한다.

제10조(선거일 공고) 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관위가 공고해야 한다.

② 선거일의 공고는 제8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거일을 공고할 때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후보자 등록 기간과 제18조가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투표 방법을 함께 공고한다.

제11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선거일을 공고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의 임기 만료 15일 이전에 선거일 공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선관위에서 선거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이때 선관위의 위원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한다.

제12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란 선거일 공고일 현재 선거권자의 명부를 말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번, 소속 학과, 학기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행정실의 지원을 받아 선관위가 작성한다.

제4장 후보자

제13조(후보자 추천) 본회의 정·부회장 후보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추천한다.

제14조(후보자 등록) ① 본회 정·부회장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 등록 기간”이라 한다)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

1. 본회의 정·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2. 선관위 위원

③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디지털 파일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후보자 본인의 상반신 사진(정·부회장 각 1매)
3. 재학증명서(정·부회장 각 1매)
4. 자기소개서(정·부회장 각 1매)(자유 양식)
5. 후보자 소견서(자유 양식)
6. 서약서(정·부회장 각 1매)([별지 제2호 서식])
7. 추천서(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가 연서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④ 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2.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⑤ 등록이 마감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제15조(후보자 기호 부여) ① 이 세칙에서 후보자의 “기호”란 투표용지에 표시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지체 없이 모든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각 후보자에게 기호를 부여한다.

③ 기호의 부여는 추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후보자 공개)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한 후 후보자의 등록 사실을 후보자의 기호와 함께 선거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때 제14조 제3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류도 함께 공개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출마할 수 없게 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정의 등) ① 이 세칙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
2. 선관위 위원
3. 본회의 정·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4. 본회의 정회원 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③ 후보자 이외의 선거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기 원하는 자는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별 선거운동원 수의 상한과 그 등록방법은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후보자가 공개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 기구)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0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선거 벽보 부착, 인쇄물 배포, 현수막 설치,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토론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대화방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강의실 내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금한다.

② 우리 대학교를 벗어난 외부에서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22조(선거 방법) ① 선거는 선관위가 결정한 방법에 따른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전자 투표를 기본으로 하며 선거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시행할지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23조(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제24조(직접 투표) 투표소의 설치,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 시간, 기표 절차, 투표 참관, 투표관리관의 선임과 임무 등 직접 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제25조(우편 투표) ① 우편 투표는 직접 투표를 보완하는 투표 방법으로 또는 직접 투표를 대체하는 투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우편 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제26조(전자 투표) ① 전자 투표는 전자메일을 통한 투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투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 등을 말한다.

② 전자 투표는 직접 투표나 우편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시행하며, 선관위가 우편 투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③ 전자 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제27조(투표 방법의 공개) 제22조 제2항의 투표 방법과 제24조,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각 투표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일 전 7일까지 제8조 제2항의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28조(개표) ①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관위가 이를 행한다.

②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선관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개표소에 참석해야 한다.

제29조(개표 참관)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에게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제30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1인일 때 유효투표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선관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사실을 개표 이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당선인의 공고는 제8조 제2항의 게시판을 통해서 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 사실을 통지하고, 이 사실을 우리 대학교 대학원장에게도 공문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장 재선거, 재투표, 선거 연기

제31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시행한다.

1.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

② 재선거의 경우 제10조 제1항의 선거일의 공고,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후보자 등록기간, 제18조가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결정한다.

③ 재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범위는 선관위가 따로 규정한다.

제32조(재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투표를 시행한다.

1.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2. 단일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지 못한 때

② 재투표의 경우 선관위는 지체 없이 투표일을 재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재투표에 있어서 투표와 개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33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시행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할 때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은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8장 선거 불복 및 쟁송

제34조(선거소청)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피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학번
2. 소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장을 접수한 선관위는 3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소청 사항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제34조(선거와 당선의 확정)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선관위는 재적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선거 또는 당선인 결정 사실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 또는 당선인 결정이 무효로 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선거 또는 당선은 확정된다.

부칙(2021. 11. 0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이 세칙 제정 당시의 선관위 구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제○○대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정학생회장 후보자

성명(한글) :		학번 :
	학과 과정	학기
연락처 : (주소) (전화)		

2. 부학생회장 후보자

성명(한글) :		학번 :
	학과 과정	학기
연락처 : (주소) (전화)		

상기와 같이 제○○대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에
정・부학생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정학생회장 후보자 : (인)
부학생회장 후보자 : (인)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별지 제2호]

제○○대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 서약서

1. 정학생회장 후보자

성명(한글) :		학번 :
	학과 과정	학기
연락처 : (주소) (전화)		

2. 부학생회장 후보자

성명(한글) :		학번 :
	학과 과정	학기
연락처 : (주소) (전화)		

상기 2인은 제○○대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에 정・부학생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들은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선거운동지침을 준수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영남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들은 공명선거의 진행을 위하여 금품 살포, 유언비어 유포, 타 후보 비방, 폭력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당선되었을 때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영남대학교 학우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 기타 선거 기간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정학생회장 후보자 : (인)
부학생회장 후보자 : (인)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3호]

제○○대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추천서

정 : *성명/학과/학위과정/학기*			**부 :** *성명/학과/학위과정/학기*	
순번	성명	학번	학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추천은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생회 정회원만 가능합니다. (정회원 : 해당 학기 재학생)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